

심의결과 **임안대로가결**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기
제 37 호	제 74 차	1985.6.20	총계 최상탁

의안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」 일부 개정

- 의결사항
1.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을 붙임과 같이 각각 일부 개정한다.
 2. 실시일자 : 1985. 7. 1.

제의관계
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 72 조

제의취지
산업구조 조정지원과 관련된 대출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지부담을 완화하고 농수협외 수지개선 및 농수산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고자 당행의 농업, 수산업, 회원사업 어음담보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산업구조 조정지원과 관련한 당행의 기탁어음 등 증권담보대출금리를 등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정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.

38 / 45

참고 사항

제외된 기금규조항

한국은행법 제 72조

-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제 69조에 규정된
여신업무에 관한 이율을 정한다.

(이 하 생 략)

[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인용] 일부 개정 (안)

현행		개정 (안)		비고
구분	이율	구분	이율	
1. 상업어음 제한인	연 5.0%	1. 상업어음 제한인		농수산물자금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
2. 담보대출		2. 담보대출		
가. 수출어음 담보대출	연 5.0%	가. 수출어음 담보대출	(현행과 같음)	
나. 외화표시공급어음 담보대출	"	나. 외화표시공급어음 담보대출		
다. 농수산물수출준비어음 담보대출	"	다. 농수산물수출준비어음 담보대출		
라. 농업, 수산업, 회원사업어음 담보 대출 (농업 및 수협취급분)	"	라. 농업, 수산업, 회원사업어음 담보 대출 (농협 및 수협취급분)	연 3.0%	
마. 근수산업어음 담보대출	"	마. 근수산업어음 담보대출		
바. 기타어음등 증권담보 대출 「한국은행의 기타어음등 증권담보 대출취급 규정」 제2조 제1항에 의한 대출중	"	바. 기타어음등 증권담보 대출 「한국은행의 기타어음등 증권담보 대출취급 규정」 제2조 제1항에 의한 대출중	(현행과 같음)	
(1) 제1호에 의한 대출	연 6.0%	(1) 제1호에 의한 대출		
(2) 제2호에 의한 대출	연 5.0%	(2) 제2호에 의한 대출		
(신설) (3) 제3호에 의한 대출	연 8.0%	(3) 제3호에 의한 대출	연 3.0%	산업구조조정관련 지원 제도 신설 (호제하)
(4) 제4호에 의한 대출		(4) 제4호에 의한 대출		
		(5) 제5호에 의한 대출	(현행과 같음)	
3.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융자	연 5.0%	3.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융자		

천만원 금융기관 「물」 거래
평균금리에 1% 「포인트」가산
한 이율(소숫점 둘째자리
부터는 떼어버림)